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55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용호, 채지연, 권민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대 900㎡, 경북 성주군 D 답 7708㎡(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1. 6. 13. 접수 제6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2. 19.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20. 상호 간에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협의서(다음부터 ‘제1차 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내용 중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 협의서 뒤에 첨부된 별지를 의미하는데, 위 협의서상 별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1.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1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2, 3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3.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다음부터 ‘E아파트’라 한다) 내의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유한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4. 30.까지 4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선 지급한 6,000만 원은 공제된 금액임).
5. 그 이외 원고 명의의 재산은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재산은 피고 B이 각 소유한다.

나.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 B은 2011. 6. 10. E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경북 성주군 C 답 8608㎡는 원고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1.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제6383호, 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11. 6. 13. 경료되었다. 위 토지는 2012. 8. 13. 경북 성주군 C 답 900㎡, 경북 성주군 D 답 7708㎡(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으로 분할되었다가 경북 성주군 C 답 900㎡의 지목이 2013. 5. 31. ‘대’로 변경되었다(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하나).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11.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다음부터 ‘제2차 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이후 2012. 5.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제2차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였다.

1.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의 모든 유체 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2012.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제1, 2항, 고유재산에 대해 피고 B 명의로 된 재산은 피고 B, 원고 명의로 된 재

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않기로 협의하며 차후 당사자 간에 재산에 대한 법적(이혼, 기타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적으로 이 건의 협의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4. 이 건 협의일로부터 원고와 피고 B은 각각 재산증식분에 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02호로 ‘피고가 원고 몰래 경북 성주군 C 답 8608㎡¹⁾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재산분할협약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다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가정법원은 2015. 10. 8.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2017. 1. 20. 선고 2015르2057), 대법원의 상소기각판결(2017. 4. 27. 선고 2017므10440)을 거쳐 확정되었다. 대구가정법원, 대구고등법원은 위 각 판결에서 제1차 재산분할협약서에 기재된 별지 기재 2, 3부동산은 이 사건 각 토지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차 재산분할협약서에 의하여 한 협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몰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8608㎡를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 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여기에 제1의 라항 기재 관련 판결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윤제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토지가 분할되고 지목변경되어 사건 각 토지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원고는 ‘제1의 라항 각 판결은 제1차 재산분할협의서의 별지 기재 2, 3부동산이 이 사건 각 토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차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무렵에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지 기재 2, 3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별지 기재 2, 3부동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필 전 토지인 경북 성주군 C 답 8608㎡가 위 별지 기재 2, 3부동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